

2026학년도

계약학과 학부편입·대학원생 모집요강

[재직자 재교육형 일반계약학과]

학부편입 학사과정 : 기계제조공학과
기업경영학과
환경안전경영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 바이오환경안전공학과
복지행정학과

2025. 10.



한국공학대학교
TECH UNIVERSITY OF KOREA

목 차

1. 재교육형 계약학과 제도안내	1
2. 모집단위 및 지원자격	2
3. 전형방법 및 사정원칙	3
4. 전형일정	5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6
6. 계약체결 제출서류	7
7. 합격자발표 및 등록안내	7
8. 지원자 유의사항	8
9. 전형료 및 등록포기 안내	10
10. 산업체 지원제도 안내	11
11.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안내	12
[별표1]. 전적대학 성적반영표(학부편입,대학원)	13

#붙임1~6. 「일반계약학과 입학관련 서식」(기업인재대학 홈페이지 참조)

- ①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② 계약학과 입학추천서 ③ 업무기술서
- ④ 입학원서(대학원)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⑥ 등록포기 및 등록금 반환신청서

1. 재교육형 계약학과 제도안내

■ 재교육형 계약학과 제도

- ① 관련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교육부)
- ② 정 의 :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轉職)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50% 이상)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여 이루어지는 학과 형태(**산업체 등과 대학이 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학과 운영**)
- ③ 산업체 범위

「재교육형 (일반)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

1. 국가(군부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산업체 단,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도 가능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4.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사업주 단체)
5.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또는 **본교와 50km 이내(직선거리 기준)**에 위치
 - ▶ 상기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산업체 등은 계약이 불가함

■ 관련문의

학 과	연 락 처
기계제조공학과	031-8041-0632 / (담당교수) 031-8041-0410
환경안전경영학과	031-8041-0637 / (담당교수) 031-8041-0615
기업경영학과	031-8041-0632 / (담당교수) 031-8041-0677
바이오환경안전공학과(대학원)	031-8041-0636 / (담당교수) 031-8041-0619
복지행정학과(대학원)	031-8041-0634 / (담당교수) 031-8041-0736
(전체) 행정지원	031-8041-0633 / 031-8041-0645

2. 모집단위 및 지원자격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 집 단 위					모집인원 (정원)
입학구분	학과명	계약형태	학습구분	학위종별	
학부 편입	기계제조공학과	재교육형	야간(주중)	공학사	8
	환경안전경영학과	재교육형	야간(주중)	공학사	15
	기업경영학과	재교육형	야간(주중) 토요일	경영학사	14
대학원 (석사)	바이오환경안전공학과	재교육형	야간(주중)	공학석사	8
	복지행정학과	재교육형	야간(주중)	정책학석사	5
합 계					50

- 1) 상기 학과는 산업체 등의 개설수요에 의한 개설예정학과로서 산업체 등의 재직자 재교육을 조건으로 선발하는 계약학과임
- 2) **대학이 정한 최소 개설기준 인원**에 미달(등록인원 기준)하여 **계약학과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계약학과는 개설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학과 개설여부에 따라 최종합격 여부가 결정됨**
- 3) 대학원(석사과정)의 복지행정학과는 **단독계약학과로 모집 절차를 별도로 운영함**

■ 지원자격

- 1) 본교와 계약학과 설치·운영계약을 체결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소속 직원**으로서 사업주의 **입학 추천 및 등록금 지원약정(50% 이상)**을 받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자(단,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는 선발에서 제외하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전문경영인(4대 보험 가입자)은 가능)
 - ▶ 근로계약 기간이 수업연한보다 길어야 함(학부신입 4년, 학부편입·대학원 2년)
 - ▶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입학구분에 따른 학력기준에 해당하는 자

입학구분	학 력 기 준
학부 편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 일반대 2학년(4학기, 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자(산업대, 방송통신대 포함) • 학점은행제 학사과정자 중 6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 국외 정규 전문대졸업(예정)자 또는 국외 4년제 학위취득 학점 1/2 취득자
대학원 (석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전형방법 및 사정원칙

■ 전형방법

1) 전형요소 및 반영배점

① 학부 편입

서류평가				계(총점)
담당업무	근무연한	전적대학 성적	추천서 및 학업계획	100% (100점)
30%(30점)	30%(30점)	20%(20점)	20%(20점)	

② 대학원(석사과정)

서류평가		면접평가		계(총점)
전적대학 성적(학부)	담당업무	전공분야(30%)	학업계획(20%)	100% (100점)
40%(40점)	10%(10점)	30%(30점)	20%(20점)	

2) 서류평가 및 반영방법

- 서류평가는 대학의 "전형요소별 세부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전적대학 성적은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평점평균(성적)을 "별표1.전적대학 성적반영표"에 의하여 반영점수를 산출함
- 근무연한은 고교졸업 후 산업체 근무경력을 산정하고, 중복되는 재직기간은 제외함

3) 면접평가(대학원)

○ 면접평가는 구술면접으로 진행하며, 아래의 평가영역과 평가기준에 따름

평가영역	면접 내용	배점	평가 기준
전공분야 (30점)	전공분야에 대한 기초지식	15	· 전공분야의 기초지식 및 이해정도
	전공에 대한 적성	15	· 전공관련 흥미와 소질
학업계획 (20점)	지원동기	10	· 학업의지 소유 여부
	학업계획 및 졸업 후 계획	10	· 학부과정과 달리 전문적, 거시적 학업계획 설계 여부

■ 사정기준 및 합격자 선발

1) 합격자 사정기준

- 전형방법은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대학원) 점수의 합산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지원자가 미달인 경우에는 전원 합격을 원칙으로 함

2) 예비후보자 선정 및 충원합격자 선발

- 예비후보자는 합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원을 선정하고, 입학전형 합격자의 미등록 또는 입학자격서류 미제출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후보자 순위에 의하여 충원합격자를 선발함
- 지정된 기간 내에 미등록 하거나 입학자격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하고 충원합격자를 선발
- 예비후보자는 최종 충원합격자 선발기간 종료 후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3) 불합격처리(대학원) : 심층면접 결시자 또는 전형 총점이 60점 미만인 자

4) 동점자 처리기준

순위	학부 편입	대학원(석사)
1순위	담당업무 전형점수 상위자	면접평가 전형점수 상위자
2순위	전적대학성적 전형점수 상위자	전적대학성적 전형점수 상위자
3순위	경력일수가 많은자	담당업무 전형점수 상위자
4순위	-	소속기업의 경력일수 많은자

※ 경력일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준으로 입학일 이전까지 산정함.

4. 전형일정 (편입/대학원 공통)

구분	일 정	세부내용	비 고
1차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2025.12.16.(화) 10:00 ~ 12.29.(월) 17:00 • 원서접수 : ㈜진학어플라이 (추후 학교 공지사항 통해 안내) • 서류제출 : (15073)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산학융합관 410호 기업인재대학 교학팀	• 산업체 계약체결 재직자에 한함 • 접수원서 및 구비서류, 산업체 계약 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우편접수는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서류 미제출시 전형대상에서 제외
	면접 평가	2025.12.30.(화) • 면접장소 : 본교 제1캠퍼스 (세부장소 및 시간은 별도공지)	• 대학원 과정에 한함
	합격자 발표	2026. 1. 5.(월) • 본교 기업인재대학 일반계약학과 홈페이지 (합격자 조회) (http://www.tukorea.ac.kr)	• 개별 통지(연락)하지 않음
	등록금 납부	2026. 1.5.(월) ~ 2026.1.8.(목) 17:00까지 ※ 가상계좌에 오후 5시 이전 입금 • 산업체부담금 : 하나은행 • 본인부담금 : 하나은행	• 합격확인 후 등록금고지서 출력 가능 • 산업체부담금은 반드시 기재출한 법인계좌에서 이체 납부 ※ 기한 내 미납 시, 합격취소 처리
	산업체부담금 납부확인서류 제출	• 산업체부담금 이체확인증 팩스 전송 (FAX: 031-8041-0639)	• 미제출시 합격취소
2차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2026.1.12.(월) 10:00 ~ 1.20.(화) 17:00 (1차)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내용과 동일	(1차)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비고와 동일
	면접 평가	2026.1.21.(수) (1차)면접평가 내용과 동일	(1차)면접평가 비고와 동일
	합격자 발표	2026.1.26.(월) (1차)합격자발표 내용과 동일	(1차)합격자발표 비고와 동일
	등록금 납부	2026.1.26.(월) (1차)등록금납부 내용과 동일	(1차)등록금납부 내용과 동일
	산업체부담금 납부확인서류 제출	2026.1.29.(목) 17:00까지 (1차)산업체부담금 납부확인서류 제출 내용과 동일	(1차)산업체부담금 납부확인서류 제출 비고와 동일
3차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2026.2.2.(월) 10:00 ~ 2.10.(화) 17:00 (1차)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내용과 동일	(1차)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비고와 동일
	면접 평가	2026.2.11.(수) (1차)면접평가 내용과 동일	(1차)면접평가 비고와 동일
	합격자 발표	2026.2.13.(금) (1차)합격자발표 내용과 동일	(1차)합격자발표 비고와 동일
	등록금 납부	2026.2.13.(금) (1차)등록금납부 내용과 동일	(1차)등록금납부 내용과 동일
	산업체부담금 납부확인서류 제출	2026.2.23.(월) 17:00까지 (1차)산업체부담금 납부확인서류 제출 내용과 동일	(1차)산업체부담금 납부확인서류 제출 비고와 동일
예비후보자 총원합격 선발 및 등록 기간	각 차수별 등록기간 이후 ~2026.2.27.(금) 17:00까지 • 본교 기업인재대학 일반계약학과 홈페이지 또는 개별 전화통보 (http://www.tukorea.ac.kr)	• 등록방법 및 서류제출은 상기와 동일 ※ 총원합격자는 본교에서 통보한 등록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미개설학과 안내	2026.2月中 • 개별 통지		

※ 전형일정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원자가 모집인원의 50%에 미달할 경우에는 다음 회차의 입학전형에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음.

※ 각 차수의 모집단위별 미충원 인원은 다음 회차의 모집정원으로 반영하며, 각 학과별 모집정원을 모두 충원한 경우에는 다음 회차의 추가모집을 진행하지 않음.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소속직원⇒학교)

■ 원서접수

- 1) 접수기간 : (1차) 2025. 12. 16.(화) 10:00 ~ 12. 29.(월) 17:00 까지
 (2차) '26. 1. 12.(월) ~ 1. 20.(화) / (3차) '26. 2. 2.(월) ~ 2. 10.(화)
 ※ 모집정원을 모두 충원한 경우에는 다음 회차 추가모집을 진행하지 않음.
- 2) 원서접수는 **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소속직원**에 한하며, 원서접수 후 입학 원서를 출력하여 아래의 구비서류 및 산업체 계약체결서류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하고, 우편 제출 시 원서접수 기간 내에 도착하여야 함.
 - ▶ 서류제출처 :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한국공학대학교 산학융합관 410호 (기업인재대학 교학팀)
- 3) 접수가 완료된 경우 취소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기준일: 2025. 11. 17.(월)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구분	제 출 서 류	수량	비고
공통	① 입학원서	1부	· 온라인 접수 후 출력(https://apply.jinhakapply.com) · 대학원은 본교 소정양식 작성 제출
	② 재직증명서	1부	· 원본(대표자 직인 필수)
	③ 업무기술서	1부	· 근무경력, 국가기술자격증, 업무기술 및 학업 계획 등 상세 기재 (※전형요소에 반영됨)
	④ 4대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서(개인)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1부	·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 기초수급자·(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국민연금 제외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털(http://minwon.nhis.or.kr) · 직장가입자 전체 이력이 표시 되도록 발급
	⑥ '2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1부	· 대표자 직인 누락 시 접수 불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불가자는 대체서류 제출, 입학 후 30일 이내에 본 서류 제출해야 함 · 대표자(전문경영인) 지원은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유무 표기) 추가 제출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본교 소정양식<붙임2>
	⑧ 전적대학 졸업(예정,수료)증명서 ⑨ 전적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1부	· 학점은행제 취득자는 학점인정증명서 제출 ※ 대학사정으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아래 참조

※ 상기 서류는 모두 필수 제출이며, 누락 시 불합격 처리됨

※ 서식 및 제출서류는 한국공학대학교 기업인재대학 일반계약학과 홈페이지 모집요강에서 다운로드

※ 전적대학 사정으로 **수료증 및 최종성적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다음의 대체서류에 대학담당자 **확인사항 기재 후 제출**하고, **최종 증명서는 '26.2.20.(금)까지 제출(미제출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수료증-재학증명서**(수료학년, 학점, 졸업학점, 담당자명, 연락처)/**최종성적증명서**-원서접수 시점의 성적 증명서(사유, 담당자명, 연락처)

6. 계약체결 제출서류(산업체↔학교)

■ 제출서류(산업체)

제출서류	수량	비고
①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2부	· 본교 소정양식(대표자 직인 필수) - 기업인재대학 계약학과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https://contract.tukorea.ac.kr/contract/3963/subview.do)
② 계약학과 입학추천서	1부	
③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minwon.nhis.or.kr) - 가입인원이 반드시 표시 되도록 발급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법인통장 사본	1부	· 산업체부담금을 납부(이체)하는 법인명의 통장

※ 상기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까지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누락 시 계약이 불가함

7. 합격자발표 및 등록안내

■ 합격자발표

- 1) 합격자 명단은 본교 기업인재대학 일반계약학과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발표일을 사전에 숙지하고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함
(<https://contract.tukorea.ac.kr/contract/3841/subview.do>)
- 2) 합격자는 지정된 일시에 합격통지서와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산업체 부담금 고지서는 반드시 산업체에 고지하여야 하며, 산업체부담금 및 개인부담금은 지정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함
- 3)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보 없이 합격이 취소됨**

■ 등록안내

- 1) 등록금은 개인부담금과 산업체부담금을 약정된 금액만큼 각각의 가상계좌에 납부
▶ 합격자 발표 페이지 「등록금 고지서」 출력
- 2) **산업체부담금은 반드시 사전에 제출한 법인계좌에서 이체**해야 하며, 기한 내에 **입금증빙자료를 기업인재대학 교학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이체확인증 및 통장이 체내역 등 은행거래를 통한 서류만 인정함 (**미제출시 입학취소**)

- 방문제출 :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정왕동), 한국공학대학교 산학융합관 410호 (기업인재대학 교학팀)
- FAX 제출 : 031-8041-0639 (학과 및 성명 반드시 기재)

산업체부담금 납부 확인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지원서류로 제출한 **법인계좌와 동일한 계좌에서 이체** 되어야 하며, **예금주(회사명)와 출금계좌번호가 명시된 증빙만 인정**
- 이체증빙 예시
 - 출금된 내역이 포함된 통장면의 사본(상단에 출금계좌 명시되어야 함)
 -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출력한 이체확인증(출금계좌 명시되어야 함)
- **무통장입금증은 불인정**
- 산업체부담금 이체내역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개인부담금은 해당되지 않음

8. 지원자 유의사항

■ 서류제출 관련

- 1)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구비서류가 미비하여 전형이 불가능한 경우 **불합격 처리함**.
- 2) 예정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담당자확인 재학·성적증명서 등)를 제출하고 최종 합격하여 등록한 경우, **2026.2.20.(금)까지 본 증명서(졸업·수료증명서, 최종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기한내 미제출 시 합격을 취소함)**
- 3) **국외대학 출신자 제출서류**(졸업(예정)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는 반드시 해당국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아 제출하거나 해당국가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 ▶ 제출서류가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되었을 경우 한글로 번역 후 공증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
- 4) 제출 서류에 근거하여 합격하여도 출신학교 **학력조회 후 자격 미달 사항이 확인**되거나 **기타 입시부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취소** 처리함.

■ 이중등록 및 본교출신 관련

- 1)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 예치금 납부, 문서 등록 포함)하여야 함.
- 2)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지원 불가(단, 제적생 및 졸업생은 가능)

■ 재직조사 관련

- 1) 입학 후 재학생은 **매학기 개시 전월 시행**하는 재직조사에 반드시 **재직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제적** 처리함.
 - ▶ 매년 1학기 전월 :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제출
 - ▶ 매년 2학기 전월 :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산업체 퇴직 관련

- 1) 계약학과는 산업체 소속 근로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산업체의 교육경비 부담을 전제로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제도임.
- 2) 계약학과 입학 후 산업체에서 **학생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및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되거나 제적** 처리함.
- 3)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권역 외)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
- 4) 상기(3번)의 사유로 자진퇴사한 경우 학생신분 유지는 다음에 한함.
 - ① 해당 계약학과 운영기간 내 이수해야할 학점의 50%이상을 취득하거나,
 - ② 해당 이수 학점의 50% 미만을 취득했을 경우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 업계 또는 동일직무(표준산업분류 및 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했을 경우
- 5) 학적이 유지되는 퇴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등 고용보험공단 발급서류를 **기업인재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 퇴직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위 사항들을 위반한 자는 본교 입학 이후라도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함.

9. 전형료 및 등록포기 안내

■ 전형료

- 전형료 : 입시전형료 면제

■ 등록포기

- 1)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 전액(개인부담금 및 산업체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보 없이 합격을 취소함.
- 2) 본교에 합격하여 등록하였으나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포기 및 등록금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단, 학과 미개설로 인한 등록금 환불은 일괄로 처리하며, 별도 공지 예정임)

- 등록금 환불기간은 신청자에 한해 추후 별도 공지
- 기타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칙에 의거하여 처리함

*등록금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입학일 또는 해당학기 개시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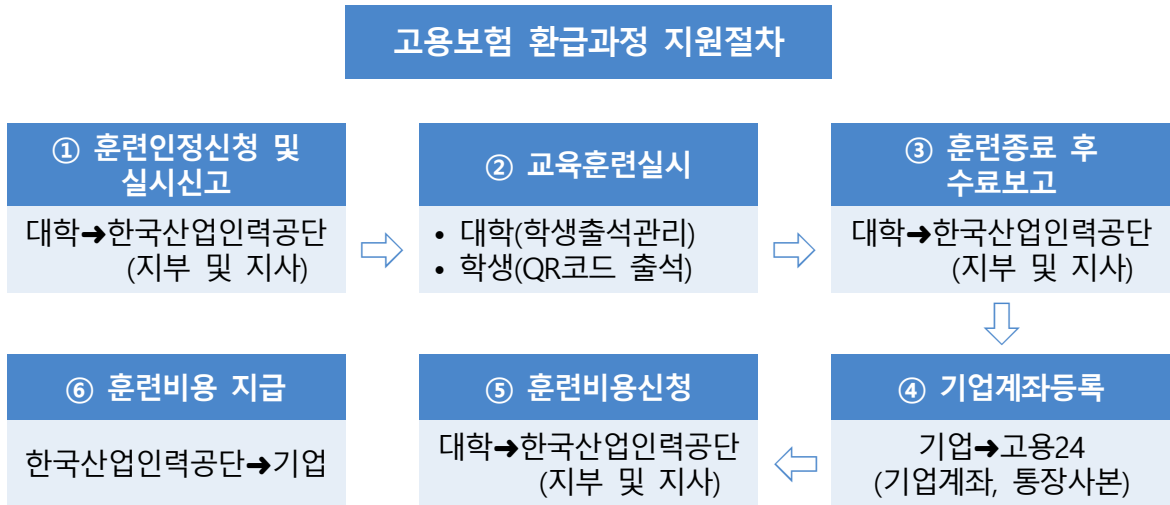
- 3) 제출처: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한국공학대학교 산학융합관 410호
기업인재대학 교학팀, ☎ 031-8041-0632, 0636, 0633

10. 산업체 지원제도 안내

■ 고용보험 환급제도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고용보험 환급제도)

- 가.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나. 「고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 수여를 목적으로 개설한 교육과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대학에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는 직업교육훈련과정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그 교육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 대학과 산업체(우선지원 대상기업 등)가 설치·운영하는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 과정 계약학과**가 이에 해당됩니다.



2) 비용지급 기준

- 가. 대학이 신청한 훈련기간 동안 **학생이 QR코드 전자출결로 출석을 80%이상**일 경우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여 훈련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훈련비용 신청절차(대학→한국산업인력공단)

- 가. 매학기 기업은 '고용24'로 **산업체명의 통장사본을 등록**합니다.
- 나. 대학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회사소재지의 해당 지부지사)으로 비용을 신청합니다.
-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등록계좌로 훈련비용을 각 산업체로 지급합니다.

▶ (관련문의) ☎ 031-8041-0632

11.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안내

※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계약학과 등의 운영비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별표6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대학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운영비로 발생한 비용

□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란 연구나 인력 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에서 일정 비율 공제해 주는 제도로 3월 법인세 신고 시 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위탁 및 공동 기술개발비, 인력개발비, 맞춤형 교육 비용, 현장 훈련 수당 등 국내 법인의 연구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기업?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유통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기업과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등이 해당하며 비영리 기업이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산업기술연구조합,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등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음

□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율?

구 분	규 모	공 제 율
총액발생기준	중소기업	당해 연도 발생액 x 25%
	중견기업	당해 연도 발생액 x 8%
	대기업	당해 연도 발생액 x 0~2%

□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신청방법?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사전심사 신청서, 과세표준 신고서, 세액공제 신청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연구과제 총괄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국세청 우편 또는 방문 접수나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 전적대학 성적반영표(학부편입)

등급	전 적 대 학 평 점 구 분					반영배점
	4.50만점	4.30만점	4.00만점	3.00만점	100점 만점	
1	4.25~4.50	4.07~4.30	3.79~4.00	2.85~3.00	97.2~100	20
2	4.00~4.24	3.84~4.06	3.58~3.78	2.70~2.84	94.4~97.1	19
3	3.75~3.99	3.61~3.83	3.37~3.57	2.55~2.69	91.6~94.3	18
4	3.50~3.74	3.37~3.60	3.16~3.36	2.40~2.54	88.8~91.5	17
5	3.25~3.49	3.13~3.36	2.94~3.15	2.25~2.39	85.9~88.7	16
6	3.00~3.24	2.89~3.12	2.72~2.93	2.10~2.24	83.0~85.8	15
7	2.75~2.99	2.65~2.88	2.50~2.71	1.95~2.09	80.1~82.9	14
8	2.50~2.74	2.41~2.64	2.28~2.49	1.80~1.94	77.2~80.0	13
9	2.25~2.49	2.17~2.40	2.06~2.27	1.65~1.79	74.3~77.1	12
10	2.00~2.24	1.93~2.16	1.85~2.05	1.50~1.64	71.4~74.2	11
11	1.75~1.99	1.69~1.92	1.64~1.84	1.35~1.49	68.5~71.3	10
12	1.50~1.74	1.46~1.68	1.43~1.63	1.20~1.34	65.7~68.4	9
13	1.25~1.49	1.23~1.45	1.22~1.42	1.05~1.19	62.9~65.6	8
14	1.01~1.24	1.01~1.22	1.01~1.21	1.01~1.04	60.1~62.8	7
15	1.0	1.0	1.0	1.0	60	6

■ 전적대학 성적반영표(대학원)

등급	전 적 대 학 평 점 구 분					반영배점
	4.50만점	4.30만점	4.00만점	3.00만점	100점 만점	
1	4.25~4.50	4.07~4.30	3.79~4.00	2.85~3.00	97.2~100	40
2	4.00~4.24	3.84~4.06	3.58~3.78	2.70~2.84	94.4~97.1	38
3	3.75~3.99	3.61~3.83	3.37~3.57	2.55~2.69	91.6~94.3	36
4	3.50~3.74	3.37~3.60	3.16~3.36	2.40~2.54	88.8~91.5	34
5	3.25~3.49	3.13~3.36	2.94~3.15	2.25~2.39	85.9~88.7	32
6	3.00~3.24	2.89~3.12	2.72~2.93	2.10~2.24	83.0~85.8	30
7	2.75~2.99	2.65~2.88	2.50~2.71	1.95~2.09	80.1~82.9	28
8	2.50~2.74	2.41~2.64	2.28~2.49	1.80~1.94	77.2~80.0	26
9	2.25~2.49	2.17~2.40	2.06~2.27	1.65~1.79	74.3~77.1	24
10	2.00~2.24	1.93~2.16	1.85~2.05	1.50~1.64	71.4~74.2	22
11	1.75~1.99	1.69~1.92	1.64~1.84	1.35~1.49	68.5~71.3	20
12	1.50~1.74	1.46~1.68	1.43~1.63	1.20~1.34	65.7~68.4	18
13	1.25~1.49	1.23~1.45	1.22~1.42	1.05~1.19	62.9~65.6	16
14	1.01~1.24	1.01~1.22	1.01~1.21	1.01~1.04	60.1~62.8	14
15	1.0	1.0	1.0	1.0	60	12

- ※1. 평점평균과 백분율 모두 기록된 경우에는 평점평균을 우선 적용
- 2. 복수학위 취득(예정)자는 최종 출신대학의 성적을 반영
- 3. 지원당시 졸업예정자는 직전학기 성적까지만 반영
- 4. 독학사 및 학점은행제는 환산된 과목의 평점평균으로 성적을 반영
- 5. 외국학위 성적은 번역본을 기준으로 본 "성적반영표"를 적용하여 반영함